`

#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제 1 조 ~ 제 4 조 (생략) | 제1조 ~ 제 4조 (좌동) | |
| 제 5 조 (이용자의 확인 및 비밀번호) | 제 5 조 (이용자의 확인 및 비밀번호) | |
|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 |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<br>단, 이용자가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 시 ATM통장출금 비밀번호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신청서를 징구하고 별도 예외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 | 비밀번호 입력단계 축소 가능 |
| 가.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: 출금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무통장/무카드 비밀번호<br>나. ATM통장출금 서비스 : 출금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ATM통장출금 비밀번호 | 가 ~ 나 (좌동) | |
| ② ~ ③ (생략) | ② ~ ③ (좌동) | |
| 제 6 조 ~ 제 10조 (생략) | 제 6조 ~ 제 10조 (좌동) | |
| 제 11조 (서비스의 제한) | 제 11조 (서비스의 제한) | |
|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 | 면책/제한구분 |
| ① ~ ⑧ (생략) | ① ~ ⑧ (좌동) | |
| 제 12조 ~ 제 13조 (생략) | 제 12조 ~ 제 13조(좌동) | |
| 제 14조 (면책) | 제 14조 (면책) | |
|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. 다만,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|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손해배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준하여 변경 |

| | | |
|---|---|---|
| ① 제 5조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<br>②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<br><br><br>③ ~ ④ (생략)<br>제 15조 ~ 제 16조 (생략) | ① 삭제<br>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누설,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<br>② 이용자가 비밀번호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이를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<br>③ ~ ④ (좌동)<br>제 15조 ~ 제 16조 (좌동) | |